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재입법예고 사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9.1 ~ '20.10.12)를 진행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진행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현행화(안 별표1)
- 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반기준' 표준화(안 별표 8)
- 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10)
-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생 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사항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1.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1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 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 구실	법 제12조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19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 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 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 구실	법 제21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 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 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 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 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 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 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 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란 중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
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나목란 중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
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 로 등의 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 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및 제31조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4조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별표 3]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저위험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1호	등록취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대행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안전점검 및 정밀	법 제17조제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	제7호		3개월	6개월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8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호	250	300	400

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3호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 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000	1,200	1,500
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4호	250	300	4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 락 처	(044) 202 - 4856